

第2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4月9日(金) 15時20分

議事日程(第1次 本會議)

- 第24回鍾路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區廳長 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 案件

- 第24回鍾路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面
- 區廳長 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憲九議員 外 4人 發議) 3面

(15時20分 開議)

○議長 李斗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55條規定에 의거 在籍議員 22名 中 出席委員 20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第2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 開議를 宣布합니다.

事務局長! 나와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根培 事務局長 金根培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鍾路區 인구역 세대 책추진 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特別市鍾路區 수수료 징수 조례 중개 정조례(안), 서울特別市鍾路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 중개 정조례(안), 서울特別市鍾路區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 조례 중개 정조례(안), 서울特別市鍾路區 새마을이동도서 관위 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件의 條例案과, 서울特別市鍾路區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93年度 정수 물품 추가 취득(안) 등 2件의 承認案이 제출되었으며 李炳述議員을 소개 議員으로 하여 종로구 가회동 일대 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특별 대책 수립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地方自治法 第42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초대 議長, 副議長의 임기가 '93年 4月 14日 24時를 기하여 임기 만료되며 地方自治法 第50條 및 同法施行令 第20條의 2 별표 7의 规定과 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 第5條 및 第6條의 规定에 의하여 설치된 3개 常任委員會 委員과 委員長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

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대 常任委員會 委員과 委員長의 임기는 鍾路區議會 第16回 議長, 副議長의 임기와 같이 '93年 4月 14日 24時에 임기 만료되므로 금번 會期에서 議長, 副議長 선거와 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 第10條 规定에 의거해서 3개 常任委員을 선임하고 아울러 委員長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3年 4月 2日 陳琦植議員 外 7人の 議員으로부터 臨時會 집회 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事務局長! 수고했습니다.

1. 第24回鍾路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5時24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1項 第24回 鍾路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第2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는 5件의 條例案과 2件의 承認案, 1件의 請願 등 8件의 案件과 區政에 대한 質問, 議長, 副議長 선거 및 常任委員 선임 常任委員長 선거 등 주요 안건이 있어 會期를 '93年 4月 9日부터 4月 14일 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會期決定의 件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運營委員會가 협의하여 작성된 議事日程은 여러 議員님

앞에 배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의 사 일 정 (안)

제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3. 4. 9(금) 15:00 개회식 직후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결의('93.4.10~4.12)	제1차 본회의
'93. 4.10(토) ~ 4.12(월)	휴 회	상임위원회활동
'93. 4.13(화) 10:00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구역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 8. 가회동일대건축고도제한완화등특별대책수립청원 9. 구정질문 10. 의장·부의장선거의 건	제2차 본회의
'93. 4.14(수) 10:00	1. 시민행정위원회위원선임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 건 3. 시민행정위원장선거의 건 4. 도시건설위원장선거의 건 5.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6. 운영위원장선거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제3차 본회의

2.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憲九議員 外 4人 發議)

(15時25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2項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을 上程합니다.

區政質問에 대하여 李憲九議員 外 4人으로부터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가 發議되었습니다.

李憲九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李憲九議員입니다.

本 議員이 對 區政質問에 대한 議案을 提出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東勳 區廳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鐘路區議會는 區廳長님이 새로 오시고 또 副區廳長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3개 局長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區廳長이며 局長들은 종로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구정관을 듣고 싶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작년 12月에 豫算을 결의한 '93年 1/4분기에 대한 구정질의를 각 議員들께서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議員님들의 의견이 本 議員과 일치하리라 생각되어서 區政質問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발의연월일 : 1993. 4. 8.

발의자 : 이현구의원외 4인

1. 주문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종로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1992년도 종로구정의 추진사항과 1993년도의 시책방향 및 앞으로의 시책추진방향 등 종로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록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議長 李斗鶴 李憲九議員! 수고했습니다.

質疑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討論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議員님에게 당부드릴 것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區廳長께서 새로 부임했으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休會 동안에 개최되는 각 常任委員會를 경유해서 제안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각 常任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을 심사하도록 本會議는 '93年 4月 10日부터 4月 12日까지 3일간 休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第1次 本會議는 散會하고 第2次 本會議는 '93年 4月 13日 10時에 開議됨을 알려드리니 4月 13日까지 각 常任委員長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사항을 4月 13日 기필코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29分 散會)

○出席議員 21名

李斗鶴 李憲九 鄭命浩

善九	熙信	泰贊
孝鍾	昌禹	永成
玄鄭	丁朴	田金
漢魯	岩浩	龍一
壽萬	在相	臥光
玄李	羅芮	林孫
旭得	述植	先中
相載	炯琦	勸憲
千沈	李陳	朴金